

「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9. 17(월) 장문혁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장문혁 의원)

-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통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자 함.
- 지원대상(안 제3조)
 -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(시내버스)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
- 지원신청(안 제4조)
 -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읍·면장에게 신청
- 지원방법(안 제5조)
 -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
 -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지원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
 -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·면장에게 신청하고
 -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제23조에 근거하면서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